

「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」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01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10월 1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패션허브 선도사업은 「국내 최대 패션상권인 동대문 패션시장」의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해 동대문 상권에 패션창업허브, 교육시설 및 디지털 팩토리를 조성하여,
- 나. 패션산업 분야 창업기업과 소공인에게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20. 2월부터 신규 조성 및 추진 중인 사업으로
- 다. 패션창업허브 입주기업의 성장 지원, 예비창업자 및 청년 혁신인재 교육과 첨단 장비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개요

- 사무명 :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
 - 대상시설(3개) : 패션창업허브, 패션아카데미, 디지털팩토리
- 위탁기간 : 3년 ('21.1월 ~ '23.12월)
- 위탁방식 : 시설형 민간위탁 (예산지원형)
-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모집 (신규)
- 소요예산 : 연 8,714백만원 (산출근거 : '20년 운영예산 기준)

나.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(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), 제9조(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), 제12조(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및 제13조(지원센터 운영의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」 제5조(청년창업 지원 사업)
- 「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」('18. 2. 24.)
- 「서울패션허브 단계별 추진계획」('19. 10. 30.)
- 「패션지원 정책 운영 체계화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」('20.7.31)

○ 추진 필요성

- 패션산업 분야 창업기업에 제품 디자인 개발, 사업화 지원, 마케팅 등 특화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상시 지원(엑셀러레이팅)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므로 민간위탁을 통해 업무 추진 효율성 강화

다. 주요 위탁사무

○ 패션산업 분야 창업기업 성장 비즈니스 지원

- [유망기업 발굴·유치] 패션산업 분야 우수기업 발굴·유치
- [원스탑 성장 지원] 창업기업 성장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·운영
- [해외 진출 지원] 해외전시회 참여, 바이어 연계 등 글로벌 진출 지원

○ 투자자·바이어 등 지원기관 및 패션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

○ 권역별 패션지원센터 총괄 및 허브기능(도심권패션지원센터) 추진

○ 패션산업 예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혁신인재 육성 교육

- [예비창업기업 지원] 사업자 등록, 비즈니스 모델 수립 지원
- [현장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] 기획·생산·유통 등 프로젝트형 교육 수행

○ 3D 샘플 제작, 자동재단 등을 위한 첨단장비 지원 및 교육

○ 패션허브 운영 총괄 : 공간 운영·관리, 장비 등 시설 설치·관리, 홍보 등 기타 운영업무 추진

라. 위탁시설 개요

① 패션창업허브 ('21. 2월 개관예정)

- 위치 : 종로구 종로6가 262-1 동대문종합시장 B동 4층
- 규모 : 3,140 m^2
- 공간구성 : 창업기업 독립형 보육공간 30실, 개방형보육공간 20석, 스튜디오 2개소, 쇼룸, 입주기업 소개 키오스크, 회의실 등
- 조성비('20년) : 3,950백만원

② 패션아카데미 ('21. 4월 개관예정)

- 위치 : 중구 마장로 22 DDP패션몰 5층
- 규모 : 1,728 m^2
- 공간구성 : 패션 관련 예비창업기업 지원공간, 컨퍼런스룸, 소강의실 등
- 조성비('20년) : 2,233백만원

③ 디지털팩토리 ('20. 12월 개관예정)

- 위치 : 중구 마장로 22 DDP패션몰 4층
- 규모 : 1,369 m^2
- 공간구성 : 3D 샘플 작업실, 자동재단실, 패턴카드실, 메이커 스튜디오, 원단 창고, 디지털샘플 리뷰 라운지 등
- 조성비('20년) : 2,144백만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5조(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)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
2.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
4.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지원

제9조(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) ① 시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,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.

3.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
4. 국내 및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지도와 자문
5. 그 밖에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12조(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(이하 이 조에서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3조(지원센터 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- 「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」

제5조(청년창업 지원 사업)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 할 수 있다.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1년 예산편성 시 반영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거점반 이종민 (☎ 2133-8781)